



수원시 화물차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유희공간 활용 방안

오한림 수원시정연구원 협업연구원

dhgksfla@korea.kr

※ 본 SRI 정책 Brief는 2024년 '수원시 공무원 협업연구자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발간한 간행물입니다.

요약

Ⅰ 화물차 불법주정차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불편 발생

- 최근 5년간 화물차 등록대수 및 밤샘주차 단속건수 지속 증가
- 화물차 특성상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야기
-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대기·소음·미관 등 생활환경 저해에 따른 시민불편 발생

Ⅱ 도로 내 유희공간 활용 사례 검토

- 부산광역시 화물차 노상밤샘주차장 : 00시~04시 이용 가능
- 용인시 마평교차로 임시노상주차장 : 24시간 이용 가능

Ⅲ 관내 도로 유희공간 조사 결과 : 총 130면 확충 가능

- 장안구 덕영대로 (월암IC교 하부 → 밤밭지하차도 입구) : 20면
- 권선구 경수대로 (비행장사거리 ↔ 시경계) : 70면
- 권선구 서부로 (02034 정류장 → 탐동지하차도 남단) : 30면
- 장안구 천천로 (안죽골삼거리 → 울목교) : 10면

정책제언

Ⅰ 화물차 노상주차장·밤샘주차 허용구간 설치 및 운영

- 현행 법령 및 단속 인력 현황 상 단속으로 도로 내 불법주정차 해소는 매우 어려움
- 노상주차장(또는 주차허용구간) 조성 및 야간안전시설 설치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

Ⅱ 『수원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밤샘주차 가능 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차고지 외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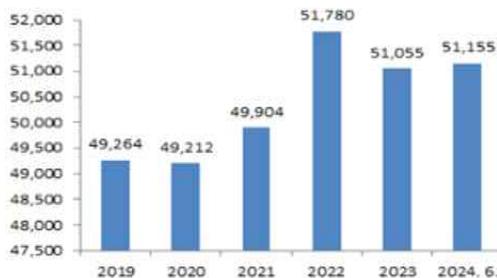
1 화물차 불법주정차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현황

- 수원시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 5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화물차 등록대수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불법 밤샘주차 발생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원시 등록 화물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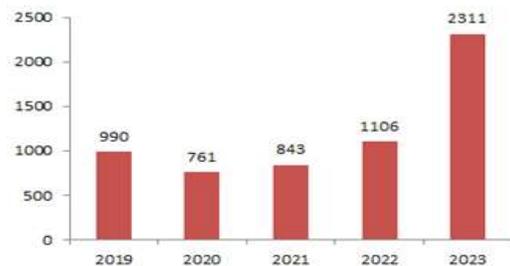
(단위 : 대)



출처 : 수원시 통계 (www.suwon.go.kr/stat/index.do)

<수원시 불법 밤샘주차 단속 건 수>

(단위 : 건)



출처 : 수원시 대중교통과 내부 자료

□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야기

- 화물차는 전장 및 전폭이 커서 일반 승용차보다 운전자 시야를 크게 제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높임
- 야간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하중이 무거운 화물차에 추돌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천 갯길에 불법주차된 화물탑차 들이받아 30대 화물차 기사 숨져” (2024. 4. 18. 경기일보)
 - “부천시 배달 오토바이 타던 20대, 불법주차 화물차 들이받고 사망” (2024. 4. 12. 경향신문)
 - “순천시 갯길 주차된 화물차 충돌,...50대 운전자 사망” (2024. 1. 15. 전라도뉴스)
- 불법주정차된 화물차와 추돌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주정차 화물차주에게 형사 입건 및 실형 처분된 사례도 발생하여 불법주정차가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음

□ 대기·소음·미관 등 생활 환경 저해

-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가 장기간 공회전을 할 경우 소음·배기가스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 발생
-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은 주차자리를 맡아놓기 위해 화물차주가 개인 물품을 적치하고, 휴게 중인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전반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대로 전락

<수원시 권선구 황구지천도로>



출처 : 경기일보(www.kyeonggi.com/article/202005201126579)

<수원시 권선구 한림도서관 인근>



출처 : 노컷뉴스(m.news.zum.com/articles/89093433)

2 유휴공간 내 주차공간 조성 필요성

□ 공간 활용률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

- 도심지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공간 활용률을 증대하고, 새로운 주차장 및 차고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수원시에서 실시한 『수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신규 화물차고지 조성비용으로 최소 378억원 이상 소요되며 토지보상비는 약 300억으로 예상됨
 - 국·도비 교부사업 공모 시 공사비에 대해서만 지원되어 토지비용은 시 재정으로만 부담해야 함

□ 세외수입 창출 및 야간 추돌사고 예방

- 유료 운영 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세외수입 창출 효과
 - 주차면 1대 당 연간 약 110만원의 세외수입 창출
 - 2021년 대항교회화물차고지(총 244면) 운영수입 : 2.8억원
- 야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야간 추돌사고 예방
 - 도로 내 유휴공간에 야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후미 추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
 - 주차장 조성 시 야간 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 야간 후미 추돌사고 예방

□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고 향후 다른 시설로 계획 변경이 용이

- 주차장·차고지(자동차정류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신속한 시설 조성 가능
- 화물차고지는 대형 구조물 없이 지상식(지평식) 주차장 형태로 조성되므로 향후 다른 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 시설 등)로 계획 변경이 용이함

※ 용어 정의

- 화물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통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 사업용 화물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차, 황색번호판 사용, 차고지 설치 의무 있음
- 비사업용 화물차 : 사업용 화물차 외의 화물차, 백색 또는 녹색 번호판 사용, 차고지 설치 의무 없음
- 화물차고지 : 화물차 주정차를 위한 장소로 사업용 화물차는 차량 크기 이상의 화물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함
- 밤샘주차 : 사업용 화물차가 0시부터 4시까지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로 다음 장소에서만 가능함
 - 가. 해당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다. 화물터미널,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불법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 행위

※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일반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화물차의 밤샘주차 및 불법주정차 행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용 및 비사업용 화물차 전체를 연구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 단, 『수원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세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사업용 화물차는 일반 주차장 이용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범위에서 제외
- 또한 “불법주정차”의 정의에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포함하고자 함

3 도로 내 유희공간 활용 사례

□ 부산광역시 화물차 노상밤샘주차장

○ 시설현황

구 분	감천항로	녹산산단
위 치	사하구 공평동 313-4, 471-12	강서구 녹산산단442로, 408로
규 모	L=1.7km / 80면	L=0.85km / 49면
위 치도		
운영방법	- 주차요금 : 월 5만원 (정기권으로만 운영) - 운영시간 : 0시 ~ 4시 - 운영인력 : 6명 (노인일자리 5, 정규직 1)	

○ 사업효과 및 만족도

- 짧은 이용시간(0시~4시)에도 불구하고 129면 정기권으로 이용되어 이용률이 매우 높아 사업효과 좋음
- 산업단지 등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화물차고지보다 이용가격이 저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음

○ 문제점

- 야간시간 대 차량 이동 조치에 어려움이 크며 운영시간 종료 후 화물차의 이동 조치가 되더라도 일반 차량의 불법주정차가 다시 발생하여 해당 도로구역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가시설 형태의 야간안전시설을 운영시간 전후에 인력을 통해 배치·철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운영인력의 사고 위험성이 있음
- 운영시간의 연장(예. 22시 ~ 08시)과 차량 견인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 항구적인 야간안전시설 도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운영시간 외 불법주차>



<현장관리소>



<시중점 안내판>



출처 : 연구진 촬영

□ 용인시 마평교차로 임시 노상주차장

위치	처인구 마평동 266-22	규모	6,000㎡ / 35면	특이사항	국도45호선 미완공구간
----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출처 : 용인시청 제공

○ 사업효과 및 만족도

- 국도 45호선의 일부 미완공 구간을 활용한 사례로 주차차량 외 통행차량이 거의 없고 토지비용이 없이 조성되어 안전성 및 사업효과 좋음
- 24시간 주차가 가능하여 이용자는 자가용과 화물차를 교대로 주차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문제점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불가가 원칙이나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도로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및 운영한 사례
- 수원시 내 주 간선도로에 적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현장사진>



출처 : 네이버 지도



출처 : 연구진 촬영

4 관내 도로 유희공간 조사

□ 조사 기준 및 방법

○ 조사 기준

-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있고 보행인구가 적은 도로
- 도로구역 내 차로가 아닌 유희공간이 있는 도로
- 도로 바깥차로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차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 다음 구간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전후 50m

○ 교통량 조사 방법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내 교통량 데이터 활용
- 조사시기 : 2024년 9월 10일 ~ 10월 9일
- 대표값 : 30일 간의 오전 1시간(08~09시), 오후 1시간(18~19시) 통행량(총 60개) 중 최대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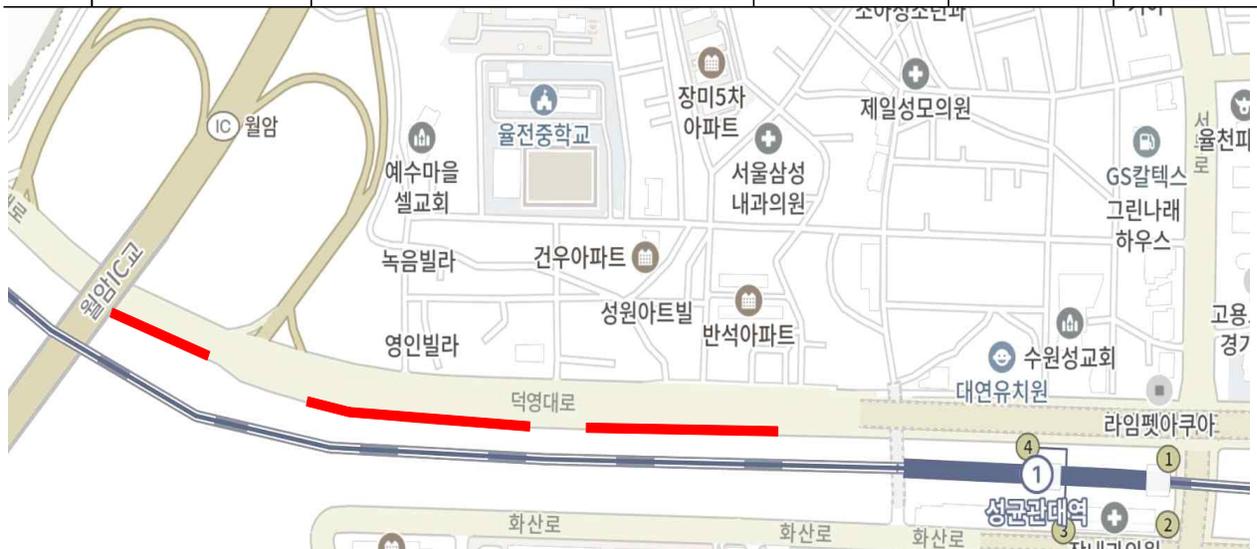
□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 4개소 적합

- 장안구 덕영대로 (월암IC교 하부 → 밤밭지하차도 입구)
- 권선구 경수대로 (비행장사거리 ↔ 시경계)
- 권선구 서부로 (02034 정류장 → 탑동지하차도 남단)
- 장안구 천천로 (안죽골삼거리-율목교)

○ 유희공간 시종점 및 위치도¹⁾

구분	도로명	구간 시점 → 종점	교통량(대)	길이	비고
①	장안구 덕영대로	월암IC교 하부 → 밤밭지하차도 입구	2,743	310m	편도4차선



1) 카카오맵 제공

구분	도로명	구간 시점 → 종점	교통량(대)	길이	비고
②	권선구 경수대로	비행장사거리 ↔ 시경계	4,681	1.1km	차로외 구간



③	권선구 서부로	02034 정류장 → 탑동지하차도 남단	1,217	480m	좌)편도3차선 우)편도2차선
---	---------	-----------------------	-------	------	--------------------



④	장안구 천천로	안죽골삼거리-울목교	795	170m	편도3차선
---	---------	------------	-----	------	-------



5 조성 및 운영 방안 검토

□ 1안)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및 정기권 유료 운영

- 유희공간 내 주차구획(주차선) 설치 후 이용자를 사전에 모집하여 정기권으로만 운영하는 방식
- 세외수입 창출 및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유료 운영에 따른 차량 파손·도난에 대한 영업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보안시설(CCTV 등) 추가 설치 필요
- 미등록 차량 주차 시 견인 및 높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하여 관리 위탁 시 관련 권한 위임 필요

□ 2안) 밤샘주차 허용구간 지정 및 무료 운영

- 유희공간 내 주차구획(주차선) 설치없이 허용시간과 시점과 종점을 정하여 구간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
- 영업 배상책임이 없으나 세외수입 창출이 불가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체계적 관리 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밤샘주차 허용구간 위임 조례에 해당 주차허용구간을 포함 시켜야 하나 수원시는 현재 해당 위임 조례가 미제정되어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조사지점별 검토 결과

- 유희공간의 위치·교통량·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검토 결과, 경수대로·서부로·천천로는 1안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불가가 원칙이나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예외 단서가 있으며,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 조성·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함

도로명	도로 종류	구간 길이	주차규모(면)	검토결과	예상 조성비용	비고
계			130		31백만원	
장안구 덕영대로	주간선도로	310m	20	2안	4백만원	CCTV 설치비용 제외
권선구 경수대로	주간선도로	1.1km	70	1안	16백만원	
권선구 서부로	주간선도로	480m	30	1안	8백만원	
장안구 천천로	보조간선도로	170m	10	1안	3백만원	

- 주차규모 산정 기준 : 1면당 L=14m, B=3.3m

- 사업비 산정 기준 : 1면당 24만원 (웅착식 도로, 야간 안전시설)

<야간안전시설(태양광표지병)>



출처 : 조달청 종합쇼핑몰(shop.g2b.go.kr/)

<설치사례-수원시 광교로>



출처 : 수원뉴스(www.su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0)

<설치사례-대구시 달성군>



출처 : 뉴스1(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579838)

6 정책제언

□ 화물차 노상주차장·밤샘주차 허용구간 설치 및 운영

- 현행 법령 상 화물차의 밤샘주차는 00시~04시에만 단속이 가능하여 계도 활동 및 단속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 계도 및 단속만으로는 유휴공간 내 추돌사고 위험 해소가 매우 어려움
 - 수원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담당자 : 1명 (수원시청 대중교통과)
 - 단속가능시간 : 00시 ~ 04시
-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또는 밤샘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관리하여 실질적인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단계별 세부 추진사항
 - 관계기관 사전 협의
 -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교통 안전 및 소방시설 저촉 여부 등)
 - 수원도시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방안)
 - 추진 계획 수립
 - 추진 배경, 추진 개요, 예상 비용 및 소요기간, 예산 확보 방안, 기대 효과 등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실시
 - 장안구 율천동, 파장동
 - 권선구 구운동, 서둔동, 권선2동, 곡선동
 - 조성공사 추진 및 운영
 - 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 (수원도시공사 등)

□ 『수원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 차고지 외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른 밤샘주차 관련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
- 향후 추가 발굴될 주차공간에 범용 가능한 조례 제정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의 밤샘주차 가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필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제4조)
- 수원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내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내용을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경기연구원(2016). 화물운수업 불법행위 관리방안 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_____. 국토계획법.

_____. 도로교통법.

_____. 주차장법.

_____.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수원시(2024). 수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수원시정연구원(2021).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방안에 따른 도입여건 분석.

해양수산부. 임항교통시설 설계기준.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적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